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광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71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10월 16일

발 의 자: 고광민 의원(1명)

찬 성 자: 곽향기, 김용호, 김종길,  
김혜영, 김혜지, 문성호,  
박춘선, 소영철, 심미경,  
이성배,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16명)

##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대부업 및 청소년 유해 불법 이동광고물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은 불법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요청 및 위반 등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대부업 관련 불법 이동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제28조 제5항 제1호 신설)
- 나. 시장은 청소년 유해 불법 이동광고물에 대하여 위반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 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제28조 제5항 제2호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청소년보호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불법 유동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대부업 관련 불법 유동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2. 시장은 「청소년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하는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요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 ① ~ ④ (생략)</p> <p>&lt;신설&gt;</p>	<p>제28조(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시장은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불법 유동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대부업 관련 불법 유동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li> <li>2. 시장은 「청소년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하는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위반등에 대한 조치 요청</li> </ol>

문서번호

2023101600000002

## 비대상사유서

요청인 : 고광민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김지혜 주무관

접수일 : 2023.10.16.

회신일 : 2023.10.16.

내용문의 : 02-2180-7953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 목 차

1. 판단 근거
2.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대부업 및 청소년 유해 불법 이동광고물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은 불법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요청 및 위반 등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